

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심사 보고

1997. 3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 결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7년 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1997년 2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7. 3. 17)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교육청 관리국장 신재철)

가. 제안 이유

○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('96.12.31)에 따라
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 마련
- 연가일수는 근속기간 기준에서 재직기간 기준으로 정함
- 지참, 조퇴,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
-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
- 국가적인 행사참가 공가허가와 5일이내의 재해구호허가

3. 검토보고 (교육사회 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본 개정조례(안)은

-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'96.12.31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내용을
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견 (참석 6명, 찬성 6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